영남대학교 교육편제 및 정원의 조정에 관한 규정<개정 2021.6.22.>

전부 개정 2021. 6.22. 교무위원회
개정 2022. 1.18. 교무위원회
개정 2022. 2.25. 직권 수정
개정 2024. 1.23. 교무위원회
개정 2024.11.26. 교무위원회
개정 2025. 2.28. 직권 수정
개정 2026.10. 6. 교무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단과대학(독립학부 포함), 학부(과)·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의 교육편제 및 정원의 조정(이하 “교육편제 등 조정”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편제란 교육조직에 의한 단과대학 또는 학과를 말한다.
2. 정원이란 학과의 입학정원을 말한다.
3. 정원조정이란 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분석이란 우리 대학교 정보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편제 등 조정을 위한 정원내 학과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1.23.>
5. 모집중지란 학과의 학생모집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6. 교육편제 조정은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통합·신설·폐지·변경으로 구분한다.
   가. 통합이란 2개 이상의 단과대학 또는 학과를 하나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신설이란 새로운 단과대학 또는 학과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다. 폐지란 기존 단과대학 또는 학과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라. 변경이란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명칭을 바꾸거나, 학과 소속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7. 미충원이란 등록인원이 학과의 입학정원(이월인원 포함)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등록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여 충원하지 못한 경우는 미충원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4.1.23.>
8. 계열이란 인문·사회·자연·공학·예체능·의학 등 학문적 분류를 말한다.
9. 특별 전부(과) 제도란 모집중지 학과의 소속 학생이 전부(과) 허가대상인 학과 중 원하는 학과로 전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신설 2024.11.26.>
10. 교육편제 조정 대상학과란 분석지표 6개 중 3개 이상 지표가 2년 연속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과를 말한다. 일정 기준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26.10.6.>

제2장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교육편제 등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육혁신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성공처장, 산학연구처장, 기획조정처장, 입학처장, 인사관리처장 등 당연직 위원과 교수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임명직 위원 등 17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2.2.25.,2025.2.28.>

③ 위원장은 교육혁신부총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팀에서 관장하며, 교무팀장은 간사가 된다.

제4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추가 임명 또는 결원에 따른 위원 임명의 경우 신임위원의 임기는 기존 임명직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원조정을 위한 지표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기 및 수시 조정 시행에 관한 사항
3.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편제 조정에 관한 사항
5. 미충원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항
6. 모집 중지 및 모집 중지 유예에 관한 사항
7. 교육편제 조정 대상학과 지정(기준 설정 포함)에 관한 사항<신설 2026.10.6.>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무처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를 총괄한다.

제3장 교육편제 등 조정을 위한 지표 분석

제8조(분석 대상) 교육편제 등 조정을 위한 분석 대상은 우리 대학교 학칙 제3조제1항에 편성된 모든 정원내 모집단위로 한다. 단, 의·약학 계열은 제외한다.<개정 2024.1.23.,2026.10.6.>

제9조(분석 단위) 교육편제 등 조정을 위한 분석은 학부(과) 단위로 한다. 단, 전공이 모집단위인 경우 전공 단위로 한다.<개정 2024.1.23.>

제10조(분석 지표) 교육편제 등 조정을 위한 분석 지표의 항목별 가중치는 일반(인문,사회,자연,공학)계열과 예체능 계열로 구분하여 [별표1]과 같이 적용한다.<개정 2024.11.26.,2026.10.6.>

제11조(분석 방법) 교육편제 등 조정을 위한 분석 자료는 우리 대학교 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공시에 해당하지 않는 지표는 우리 대학교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그 분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목별 산출 내용은 정규 분포화된 표준화 점수(T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별표 1]의 항목별 구성비를 적용한다.<개정 2024.11.26.>
2. 지표는 산출 가능한 최근 2년간의 지표를 각각 해당 연도의 70%, 전년도의 30%씩 반영하여 가중평균을 적용한다.<개정 2026.10.6.>
3. 신설학과는 편제정원이 완성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분석 결과를 적용하며 분석 1차 년도에는 최신년도 지표 100%를 반영한다.
4. 대학원 활성화 가점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별표 1]에 따라 부여한다.<신설 2024.11.26.>

제12조(분석 결과) 교육편제 등 조정을 위한 분석 결과는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값을 합산 점수화하고 이에 대하여 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자율전공학부, 편제 미완성학과, 법령 등에 의한 정원 관리 대상학과 등은 분석 결과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충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편제 등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분석 시기) 교육편제 등 조정을 위한 분석은 1년 단위(3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정시 모집 마감 후까지)로 매년 실시하되, 정시 모집 마감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23.>

제4장 교육편제 등 조정

제14조(최소 정원) ① 신규 학과 최소 입학정원은 30명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 유지 최소 입학정원은 20명으로 한다. <개정 2022.1.18.,2024.1.23.>

② 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발전 및 특성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교육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의 입학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2.1.18.,2024.1.23.>

제15조(조정 시기) 교육편제 등 조정은 매 학년도 시행한다.<개정 2024.11.26.>

[본조 제목 개정 2024.11.26.]

제16조(조정 절차) 교육편제 등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교육편제 등 조정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안내
2. 요청안 접수 및 조정 계획 수립
3. 위원회 심의
4.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5. 기획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심의
6. 대학평의원회 심의
7. 이사회 심의 및 의결(학교법인영남학원 정관시행규정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17조(조정 방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정원의 증원 : 제12조의 분석결과 해당 계열 상위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정원의 감원

가. 제12조의 분석결과 해당계열 하위 15% 이하 학과는 입학정원의 15% 이내에서 감원<개정 2026.10.6.>

나. 제12조의 분석결과 해당계열 하위 15% 초과 30% 이하 학과는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감원<개정 2026.10.6.>

다. 3년 연속 해당계열 하위 30% 이하 학과는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추가 감원<신설 2026.10.6.>

라. 가 ~ 다 목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열 상위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원 미적용<신설 2026.10.6.>

마. 미충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의 감원에 따라 입학정원이 제14조의 학과유지 최소 입학정원 미만이 되는 경우는 학과 유지 최소 입학정원까지만 감원<신설 2026.10.6.>

② 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발전 및 특성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교육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편제 등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교육편제 등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과대학장 또는 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편제 및 정원의 조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소속 교수 회의록

④ 제3항에 의거 자율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편제 등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과의 정원을 15%이상 감원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조정을 해당 학년도에 하지 않는다.<개정 2026.10.6.>

제17조의2(사전 경보체계 및 자율구조개편 유도) ① 총장은 학과의 교육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학과의 자율적인 체질 개선 및 구조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 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학과 전임교원 회의를 거쳐 공식 의견이 반영된 발전계획서 또는 통합계획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0호에 따른 교육편제 조정 대상학과
2. 제17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최근 3년 연속 해당 계열 하위 30% 이하인 학과
3. 제14조에 따른 최소 입학정원(학과 유지 최소 입학정원 20명)에 도달한 학과
4. 제18조에 따른 당해 학년도 신입생 미충원이 발생한 학과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발전계획서 또는 통합계획서의 교육목표, 학생 충원 및 확보 방안, 교육과정 개편계획, 학과간의 통합 또는 광역 모집단위 전환계획 등의 타당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편제 등 조정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10.6.]

제18조(미충원에 따른 조정) 미충원 학과에 대해서는 충원하지 못한 인원 이상을 감원한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대학발전 및 특성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26.10.6.>

제19조(모집중지 및 통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입생 모집을 중지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2년간 미충원이 발생한 경우<개정 2026.10.6.>

2. 제18조에 따른 정원 감원 결과 그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이 제14조의 학과유지 최소 입학정원 미만이 되는 경우<개정 2026.10.6.>
3. 교육편제 조정 대상학과로서 재학생 충원율이 50% 미만이 되는 경우<개정 2026.10.6.>

② 총장은 제1항의 모집 중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다른 학과와 통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모집중지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로부터 발전계획서 또는 통합계획서를 제출받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 중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6.10.6.>

1. 제19조의 모집 중지 통보 전에 자율적으로 통합을 신청하는 학과
2. 학생 정원이 관련 법령이나 다른 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제한을 받는 학과
3. 교육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학과
4. 대학발전 및 특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과

제21조(자율적 학과 통합 등) ① 제20조제1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합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편제 등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합 학과는 2년간 제17조의 적용을 유예하고 4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공과목 개설학점 확대
2. 전공과목 분반기준 완화
3. 향후 학과 조정시 의견 수렴 및 반영
4. 기타 학사관련 사항

③ 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발전 및 특성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교육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를 통합할 수 있다.

제22조(학과 폐지 등) ① 제19조제1항에 의해 모집이 중지되는 학과는 다음 학년도부터 학생 모집을 중지하고 해당 학과 재적생에 대하여 특별 전부(과) 제도를 시행한다.<개정 2024.11.26.>

② 특별 전부(과)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4.11.26.>

③ 모집중지를 시행한 학년도부터 4년 경과 후 재학생 수가 학과유지 최소 입학정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학과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4.11.26.>

[본조 제목 개정 2024.11.26.]

제23조(학과 폐지에 따른 조치) 폐지된 학과의 교원과 학생에 관련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총장은 폐지된 학과의 학생이 졸업시까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제24조(조정의 업무) 교육편제 등 조정에 관한 업무는 교무처 교무팀에서 관장한다.

제25조(차등지원) 정원이 감원된 학과에 대한 시설, 공간, 예산, 인사 등 지원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6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다.

부칙(2021. 6.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이미 통합한 학과에 대해서도 제21조를 적용한다.

부칙(2022. 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25.)

제1조(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권수정)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분석 대상), 제9조(분석 단위), 제13조(분석 시기)의 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분석 지표), 제11조(분석 방법)의 적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2.28.)

제1조(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권수정)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10.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분석 지표), 제11조(분석 방법), 제17조(조정 방법)의 적용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육편제 및 정원의 조정 신청서

❑ 신청 학부(과) : _____ 대학 _____ 학부(과)

❑ 신청 구분

※ 아래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기			
가. 단과대학 명칭 변경	( )	바. 학부(과)·전공 통합	( )
나. 단과대학 통합	( )	사. 학부(과)·전공 분리	( )
다. 순수 정원 증원	( )	아. 학부(과)·전공 소속 및 명칭 변경	( )
라. 순수 정원 감원	( )	자. 학부(과)·전공 신설	( )
마. 학부(과)·전공 내 자체 정원조정	( )	차. 전임 교원 소속 변경	( )

❑ 조정 요청내용

가. 대학 단위

현 행					**변 경 (안)**				
단과대학명		개설학부(과)		입학 정원	단과대학명		개설학부(과)		입학 정원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계					계				

※ 개편 후 입학정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공란으로 남겨둠.

※ 단과대학 단위 조정 의견은 학장 날인 필요

나. 학부(과) 단위

현 행								
학부(과)명		입학 정원	전공명		학위명		표준 정원	비고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계			계					

⬇ ⬇ ⬇

변 경 (안)								
학부(과)명		입학 정원	전공명		학위명		표준 정원	증감 정원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계			계					

※ 1. 학과인 경우 전공명 및 표준정원란 기재 생략
2. 표준정원이라 함은 학부 입학정원 중 전공별 배정인원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인원을 의미함.

❑ 조정 의견 개요

정원조정 필요성

주」 신설, 변경 : 필요성, 폐지 : 학생 모집 어려움 등 폐지 사유를 구체적(정량적)으로 기재
※ 변경, 폐지 일 경우 재적생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반드시 포함

운영계획

가. 교육 목표

주」 학과 발전계획 포함

나. 정원조정 요청분야의 국내·외 동향, 진로·취업 분야

주」 관련분야 인력수요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타 대학 사례 포함

다. 총괄 운영계획

주」 전임교원 강의비율, 연간 운영예산 포함

라. 교과과정 편성계획

마. 학생정원 확보 방안 및 계획

주」 필요시 자체 정원조정(폐과 및 폐강 기준) 방안 포함

❑ 참여 전임교원 명단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전공

위와 같이 20 학년도 교육편제 및 정원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 . . .

학부(과)장 / 대학장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1] <신설 2024.11.26., 개정 2026.10.6.>

교육편제 등 조정을 위한 분석 지표

항 목		일반계열	예체능계열	산출식
입학 (수시+정시)	입학성적(*)	10%		수시 학생부성적+정시 수능성적 가중평균
	인지 경쟁률(**)	10%	15%	(총지원자 수-결격 · 결시자수-포기자 수) / 모집자 수
	신입생 충원율	10%	15%	정원내 입학자 수 / 정원내 모집자 수
재학	재학생 충원율	23%	23%	재학생 수 / 편제정원
	중도탈락 학생비율	20%	20%	중도탈락 학생 수 / 재적생 수
취업	절대 취업률	27%	27%	취업자 수 / (졸업자 수-취업제외 대상자 수)

- 입학성적(*) : 수시 학생부 성적은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과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성적으로 산출
  정시 수능성적은 국어, 수학의 백분위와 사회 또는 과학 중 상위 1개 영역 백분위의 평균값 사용
- 인지경쟁률(**) : 4.0 이상 100점, 3.0 이상~4.0 미만 90점, 2.0 이상~3.0 미만 80점, 2.0 미만 70점으로 하여 계열별 비율 적용

※ 재학생 충원율 :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0.6 + 정원내외 재학생 충원율 × 0.4

※ 대학원 활성화 가점 최대 5점 부여 : [(석사재학생수+박사재학생수)/학부 정원내 모집자 수]
T점수를 100점으로 환산 × 0.05